

○ 일반투자가용재원은 일반세입과 경직성경비의 차로 산정

- 일반투자가용재원은 자체사업비와 의존재원사업비의 지방비부담금으로 활용되는데, 즉

$$I - II = III + IV$$

- 투자가용재원은 투자비에 소요되는 일반재원(지방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 등)의 규모를 표시(보조금과 지방채는 제외)

○ 부족재원은 투자사업비에서 일반투자가용재원을 제외한 금액임

- 우선 일반재원의 규모를 고려한 후 부족재원의 규모를 예상하고 이를 어떻게 확보할 것 인지를 결정하여야 함

- 부족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국고보조금, 지방채 등이 대표적이며, 타회계전입 및 채무부담행위 등도 가능

〈 개선방안에 의한 산정방법 〉

구 분		
일반세입 (I)	소 계	
	일반재원	지 방 세 세 외 수입 교 부 세(조정교부금) 재정보전금 등
소 계		
경직성 경비 (II)	경상비	인 건 비 경상적 경비
	의무적경비	지방채상환 교육청지원 조정교부금 등 법정적립기금 예비비 및 기타 (타회계지원)
(일반)투자가용재원	I - II	
의존재원사업비 중 지방비부담금(III)	소 계	
	의존재원 사업에 투자할 일반재원	